

예산총칙

[2020년 예산]

☎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

동부희망케어센터

【2020년 예산총칙】

제 1 조 (예산의 구성)

2020년도 동부희망케어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, 후원금, 법인전입금, 이월금, 잡수입으로 이루어진다.

제 2 조(운영비)

예산 세입·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1,944,830천원으로 한다.

1) 세입의 주요재원은 다음과 같고 세부내역은 세입예산내역과 같다.

- ① 보조금 1,444,768천원
- ② 후원금수입 350,378천원
- ③ 법인전입금 0원
- ④ 전년도이월금(후원금 포함) 149,484천원
- ⑤ 잡수입 200천원

2) 세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세부내역은 세출예산내역과 같다.

- ① 사무비(인건비) 1,278,447천원
- ② 사무비(업무추진비) 4,144천원
- ③ 사무비(운영비) 99,463천원
- ④ 재산조성비 17,100천원
- ⑤ 사업비 543,933천원
- ⑥ 잡지출 264천원
- ⑦ 예비비 1,479천원

제 3 조 (예산의 집행)

예산의 집행은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과 희망케어센터의 운영규정·세칙을 준용하도록 하며 세출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 의거 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.

예산의 각 항목 간에 다음과 같이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- ① 관간의 전용 및 동일관내 항간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하고 예산 성립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·항·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.

- ② 동일 항내 목간 전용은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전용 가능 하나 관할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집행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성립 전 예산 집행)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된 보조금 및 지정후원금, 수익자부담 경비 등은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이라도 보조 및 후원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추가경정예산)

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상정한다.

제 6 조 (수입의 감액)

동부희망케어센터의 세입·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후원금수입 및 기타 잡수입의 집행은 월별 세입실적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므로 지연 혹은 감액 될 수 있다.

제 7 조 (보조금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)

정부 회계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변경된 과목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며,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집행한다.

제 8 조 (명시 이월비)

대상자가 지정 되어 있지 않은 지정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의 이월금은 다음해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(예비비)

2020년도 사업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집행사유 발생 시,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예비비를 산정하고 예산범위내 집행할 수 있다.